

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31.
발의자 : 김성원 · 윤상현 · 이은권
경대수 · 함진규 · 김정재
김명연 · 성일종 · 정유섭
이현재 · 이양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잔임기간(殘任其間)이라는 표현은 ‘임기 중 남은 기간’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로,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.

이에 현행법의 ‘잔임기간’이라는 한자어를 ‘남은 임기’로 변경하여,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 제4항).

법률 제 호

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잔임기간이”를 각각 “남은 임기가”로, “잔임기간으로”를 “남은 임기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</p> <p>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기간이</u>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<u>잔임기간으로</u> 하고, <u>잔임기간이</u>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.</p>	<p>제12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u>남은</u> <u>임기가</u>-----</p> <p>-----<u>남은</u> <u>임기로</u>-----<u>남</u> <u>은</u> <u>임기가</u>-----</p> <p>-----.</p>